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(12.6)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적용 기간 : 2020년 12.8(0시) ~ 2020년 12.28(24시)까지
- 대상 지역 :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 - *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

< 주요 지침 >

①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유흥시설 5종*
 - 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

- 조치 내용 : **집합금지**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)
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-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

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②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일반관리시설 14종*
 - *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모임·행사

- 조치 내용 : **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**
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 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 - *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④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7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직장근무

- **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**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체
- **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**

⑥ 그 외

○ 종교시설

- 방역지침 의무화

○ 교통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- 방역지침 의무화

○ 국공립시설

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- 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○ 사회복지 이용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
○ 스포츠관람
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관중 입장

3.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.
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5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
6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7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8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전결 2020. 12. 7.
니성화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459 (2020. 12. 7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